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**재정부·국가세무총국****소형·저이윤 기업 소득세** **특혜정책 관련****문제에 관한 통지**제세[2014] 34호각 성·자치구·직할시·계획단열시 재정청(국), 국가세무국, 지방세무국, 신강생산건설병단 재무국 :소형·저이윤 기업 발전을 더 한층 지지하기 위하여 국무원 비준을 거쳐 소형·저이윤 기업 소득세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통지한다.1.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연 납세소득액이 10만 위안(10만 위안 포함)보다 적은 소형·저이윤 기업에 대하여는 그 소득액 50%를 납세소득액을 감액하고 20%의 세율로 기업소득세를 납부한다.2. 본 통지에서 말하는 소형·저이윤 기업은 <중화인민공화국 기업소득세법> 및 그 실시조례, 그리고 관련 세수정책규정의 소형·저이윤 기업에 부합하여야 한다.이에 따라 집행한다.2014년 4월 8일 |  | **财政部、国家税务总局****关于小型微利企业所得税****优惠政策有关****问题的通知**财税〔2014〕34号各省、自治区、直辖市、计划单列市财政厅（局）、国家税务局、地方税务局，新疆生产建设兵团财务局：为了进一步支持小型微利企业发展，经国务院批准，现就小型微利企业所得税政策通知如下：一、自2014年1月1日至2016年12月31日，对年应纳税所得额低于10万元（含10万元）的小型微利企业，其所得减按50％计入应纳税所得额，按20%的税率缴纳企业所得税。二、本通知所称小型微利企业，是指符合《中华人民共和国企业所得税法》及其实施条例以及相关税收政策规定的小型微利企业。请遵照执行。2014年4月8日 |